

특수계량기/원격설비 시공 · 설치확인서

건물(고객)명			
건물주소/세대수	(총 세대수 : ____ 세대)		
계량기등급	G1.6 ____ EA / G2.5 ____ EA / G4.0 ____ EA / G6.0 ____ EA		
세대 가스시설	계량기위치 : 실내 ☐ / 실외 ☐	은폐배관 ☐	매입배관 ☐
특수계량기/ 원격설비 종류	일반막식-원격 ☐	디지로그-원격 ☐	다기능가스안전-원격 ☐
	통합원격검침시스템 : ex) LS산전, 음니시스템, 피에스텍 등		다기능가스안전-비원격 ☐

※ 계량기 종류 및 등급에 따른 교체비용은 도시가스 공급전안전검침시 시설정보를 반영하여 최종 부과됩니다.

특수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시행사와 관리주체(건물주, 입주자대표회, 임대인 등), 가스실수요자(실거주자, 임대인, 임차인 등)는 원활한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계량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6호의2)에 따라 가스실수요자 또는 관리주체의 소유로 구매 · 설치 · 교체 · 고장수리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가스실수요자 또는 관리주체가 일체 부담합니다.
2. 가스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(검정 · 재검정의 유효기간)에 따라 5년(G6이하)마다 교체하여야 합니다.
3. 특수계량기 및 원격검침 설비(외부지시부 및 통합원격시스템 등)의 고장 또는 이상상태가 발생하여 원격검침 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**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** 계량기 설치침으로 가스사용량을 산출하여 요금을 고지하며 도시가스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검침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 또한 신속히 고장 또는 이상상태를 수리하여야 합니다.
4.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 만료로(5년) 교체시 도시가스에 특수계량기의 구매 · 교체 및 원격검침설비 결선작업(외부지시부 설비 · 배터리 교체 및 원격검침시스템의 유지관리 등을 제외한 단순 결선작업)을 위탁하며, 가스실수요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4항 및 별표4에 따라 요금고지서에 고지된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을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.
5. 동일한 건물에는 동일한 종류의 계량기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설치계량기의 종류 및 등급변경을 원하실 경우 계량기 정기교체 전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단, 도시가스사업법 시설기준에 적합한 종류와 등급 준수 필요)
6.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4항에 따라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재검정기간 도래 이전에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합니다.
(임차인이 단순 전출하는 경우 민법 623조에 의거 임대인에 기납부한 비용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)
7. 시행사(또는 관리주체)는 가스실수요자의 입 주 전에는 가스실수요자를 대신하여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, 가스실수요자 입주 후에는 상기내용을 가스실수요자(또는 관리주체)에게 숙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.

작성일자 : 년 월 일 .

“시 행 사(사 용 자)”

회 사 명 : .

주 소 : .

대 표 이 사 : .

(인)

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[별표4]의 2. 특수계량기 교체비용(2025.01.01자)

단위 : 원/월

특수계량기 교체비용(월분납금/선납)					
계량기 종류	구분	등급			
	OIML (KS)	G1.6 (2.5등급)	G2.5 (4등급)	G4 (6등급)	G4 초과 (6등급초과)
일반막식	원격	189	189	189	별도계상
디지로그(디지털)/ 누출점검용 계량기	비원격	312	318	309	
	원격	392	398	388	
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	비원격	873	879	902	
	원격	952	959	982	
* 해당 금액은 교체비용 일시금에서 기준금리 할인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부과 금액입니다.					

단위 : 원/월

특수계량기 교체비용(일시금)					
계량기 종류	구분	등급			
	OIML (KS)	G1.6 (2.5등급)	G2.5 (4등급)	G4 (6등급)	G4 초과 (6등급 초과)
일반막식	원격	11,457	11,457	11,457	별도계상
디지로그(디지털)/ 누출점검용 계량기	비원격	18,940	19,341	18,740	
	원격	23,783	24,184	23,583	
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	비원격	53,012	53,413	54,816	
	원격	57,855	58,256	59,660	
* 일시금은 본 공급규정 개정 이전 기존 특수계량기 설치 세대 등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을 선납하지 않은 세대의 최초 교체 시 교체비용으로 일시금(60개월분)으로 부과된다.					

계량기 교체 법적사항 및 규정(v2022.11.21)

법률	조항	내용	요약	비고
계량에 관한 법률	제23조(검정) 제24조(재검정)	※ 검정/재검정 유효기간 가. 최대유량 10 m³/h 이하의 가스미터 : 5년 나. 그 밖의 가스미터 : 8년	가정용 계량기 교체주기 : 5년	계량기 교체
	제76조(과태료)	검정/재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사용시,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	유효기간 만료 계량기 미교체시, 과태료 200만원 이하	
도시가스 사업법	시행규칙 [별표7]	가스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		도시가스 시설(배관 계량기 위치 등) 설치상태에 따른 계량기 종류
	**제1호가목1)가)	가스계량기 설치 장소 :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. 다만,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경과조치: 2013.07.25 이전 「건축법」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 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)	계량기 위치 - 실내일 경우, 원격설비 설치 (KGS 질의답변사항 : 검침기록부 부착, MO문자 검침 은 원격설비로 인정되지 않음)	
	**제1호가목2)바)③	③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환경조건 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, 배관의 안전한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[KGS Code FU551 참고] * 2.4.4.5.4 빌트인연소기 설치기준 * 2.5.4.5.2(6) 은폐배관 안전조치 사항	은폐 배관 설치된 경우, 빌트인 연소기 설치된 경우, 가스누출 확인장치 설치 - 가스누출 감지 계량기 -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-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-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- 점검구(900㎢) 이상	
	**제1호가목2)바)④	④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 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(「액화석유가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)를 설치할 것	매립 배관 설치된 경우,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	
	법률 제51조(벌칙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.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·관리를 한 시공자	[별표7]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

규정	조항	내용	비고
도시가스 공급규정 (부산시)	제14조(계량기)	③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가스계량기의 검·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, 주택용(중앙난방용은 제외) 일반계량기 교체비용은 기본요금에 포함하고, 비주택용 일반계량기 또는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은 별표4의 비용을 매월 가스사용자의 가 스 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한다.	
		⑥ 통합원격검침시스템 또는 별표4의 2 및 3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특수계량기 설치, 교체 등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..	